공　　고

대구광역시 북구 공고　제 2026 - 440호

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12조에 따른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.　3.　9.

대구광역시 북구청장

□ 사 업 명 :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

□ 사업기간 : 2026. 3. 9. ~ 2026. 5. 29.

□ 신청기간 : **2026. 3. 9. ~ 2026. 3. 25.**

□ 지원대상자

· 신청일 현재 북구 관내에서 농업에 직접 종사하는 자로, 사업비를 부담할 능력이 있으며 5년 이상 연작 가능한 자

※ 지원제외 대상

- 농림부의 FTA기금 등에 의해 피해예방시설비를 이미 지원 받은 농가
-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을 이미 받은 농가

□ 선정기준 : 선정 기준표에 따른 고득자 순으로 선정

□ 지원시설 : 전기울타리(전기퇴치기) 또는 철망울타리

□ 지원금액 : 구입 및 설치에 소요되는 총 비용의 60%(최대지원액 : 300만원)

□ 설치단가 및 기준 : 붙임참조

□ 지원방법

·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전액 자부담 투입 사업완료 후 준공검사 신청

· 준공검사 및 자부담금(설치비) 지급 증빙자료 확인 후 보조금(60%)지급

□ 신청방법 : 환경관리과 설치지원신청서 우편 제출 (구비서류 첨부)

. 제출서류: 지원신청서, 신청사유서, 설치계획서, 산출내역서 및 견적서, 위치도 및 설치예정지, 설치동의서(임차인 해당), 증빙자료 (토지대장, 토지등기부등본, 임차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

· 우편접수 주소: 우편번호 41589,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1(노원동), 북구청 노원별관 2층 환경관리과 야생생물 담당자 앞

※ 제출서류 미비 혹은 제출기한 초과 등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

※ 모든 증빙자료는 제출 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함

□ 지원대상자 의무 (사후관리)

·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기공사 등록업체를 통해 설치

· 시설물의 설치 후 5년간 지원 목적대로 사용

· 정당한 사유로 지원시설물 철거 등 필요한 경우 북구 승인 후 시행

- 시설물을 무단 철거하거나 훼손할 경우 지급된 보조금 회수조치

※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북구청 환경관리과(☎665-2574)로 문의 바랍니다.